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·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(8급 1명)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00000호, 2024. 11.26. 공포, 2024. 12. 31. 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11. ~ 11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중 총계 “69”를 “68”로, 일반직 계 “68”을 “67”로 하며, “행정서기
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· 방재안전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”
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69</u>	• <u>68</u>	-1
일반직 계	• • <u>68</u>	• • <u>67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</u> <u>· 방재안전서기 · 전산서기 또는</u> <u>방송통신서기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•	•	•	